

# 아동 포르노그래피: 모델 법률 및 글로벌 입법 개관

제 6 판  
2010 년

큰 가족재단의

국제법 및 정책에 관한 프로젝트에 따른

출판물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아동 포르노그래피:  
모델 법률 및 글로벌 개관

Copyright © 2010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제 6 판

*본 프로젝트는 미국 국무부의 보조금 번호 S-INLEC-04-GR-0015 로 부분적인 재정보조를 받아 착수했고, 현재 "우드" 자선 재단 (웨어 가족 재단)의 부분적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의견, 조사결과 및 결론 또는 권고사항은 저자의 것으로 미국 국무부나 "우드" 자선재단 또는 기타 다른 후원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소개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이하 ICMEC)는 성적 착취 및 유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단체이다. ICMEC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는 실종아동 찾기와 아동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종 착취 아동센터 설립 장려, 실종 아동에 대한 사진등의 정보를 전세계에 배포할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법집행 담당자, 검사, 판사, 법률 전문가, 비정부 기구 및 정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전세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약등의 지지 및 개정 요구, 대중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및 각 국가간의 협력 증진 노력, 그리고 인터넷상의 상업적 아동 포르노 그라피 사용 근절을 위한 세계적 재정 협력 주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및 정책에 관한 쿤 가족 재단 (The Koons Family Institute)은 ICMEC 의 내부 연구 기관으로, 쿤 가족재단은 아동의 성적 착취 상황과 아동 보호 법률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전세계적으로 연구하여, 지구촌 내 같은 분야의 기관들과 협조, 아동 착취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아동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쿤 가족 재단은 전방위적으로 아동 유괴와 아동의 성적 착취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는 실종 및 착취 아동 보호의 입법 모델 제시, 국제적 연대 형성, 동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의 모임 주도, 관련 교육과 기술 사용에 있어 최선의 모범적인 실무 사례를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ICMEC 은 지금의 ICMEC 을 있게한 설립 후원자분 들과 주요 후원자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CMEC 설립 후원자

####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마이크로 소프트 사  
 쿤 가족  
 실라 존슨  
 “우드” 자선재단

#### 쿤 가족 재단

쿤 가족  
 마이크로 소프트 사  
 엘리 & 에디트 재단

### 주요 후원자

####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프랜스 휴머  
 사리 애셔 부동산  
 컴팩  
 스탠다드 차터드 싱가포르 은행  
 아브라함 코헨& 이반 코헨  
 주식회사 AOL  
 모토롤라 재단  
 레나 로완 & 빅 대론  
 버진 아틀랜틱 항공- 어린이 재단

#### 쿤 가족 재단

다키스 조아누 & 리에타 조아누  
 아담 린데만 & 마밀리아 데이안  
 에프레임 & 캐더린 길더  
 소나벤드 미술관  
 아크네스 군드  
 밀리 글림처 & 아니 글림처  
 벨 가족 재단

# 목차

서문	i 페이지
감사의 글	ii 페이지
전문 요약	iii 페이지
모델 법률	1 페이지
정의	1 페이지
범죄	2 페이지
강제적 보고 의무	5 페이지
처벌 및 선고	6 페이지
국제법	9 페이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 의정서	9 페이지
사이버 범죄(Cybercrime)에 관한 협정	10 페이지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11 페이지
글로벌 입법 개관	13 페이지
가나 - 감비아	13 페이지
교황청 - 남아프리카공화국	14 페이지
네덜란드 - 뉴질랜드	15 페이지
니제르 - 라트비아	16 페이지
러시아 - 리히텐슈타인	17 페이지
마다가스카르 - 모리타니아	18 페이지
모잠비크 - 방글라데시	19 페이지
버키나파소 - 부룬디	20 페이지
부탄 - 브라질	21 페이지
브루나이 - 세이셸	22 페이지
세인트루시아 - 스와질랜드	23 페이지
스웨덴 - 슬로바키아	24 페이지
슬로베니아 - 아이티	25 페이지
아일랜드 - 에티오피아	26 페이지
엘살바도르 - 우간다	27 페이지
우루과이 - 일본	28 페이지
자메이카 - 짐바브웨	29 페이지
차드 - 케냐	30 페이지
코모로 - 키르기스스탄	31 페이지
키프러스 - 트리니다드 토바고	32 페이지
파나마 - 포르투갈	33 페이지
폴란드 - 호주	34 페이지
결론	35 페이지

## 서문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착취당한 아동들의 삶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착취의 영구적인 기록에 의해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 성범죄자는 이를 필름이나 비디오에 기록하는데, 이 기록물은 다시 아동을 공갈 협박하여 또 다시 그들을 복종케 하는 “무기”가 되어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문서화된 이미지들은 또한 성범죄자들의 성적 환상을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대다수의 아동 성희롱 자들은 현재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장본을 체계화하고, 보관하며 그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가제작한 불법 아동 이미지들은 인터넷상에서 희소가치를 가지는데, 성범죄자들은 서로간의 성적 착취 이미지를 자주 교환합니다. 이들 이미지들이 온라인 공간에 공개되면, 회수는 불가능해지며 영원히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은 이미지가 관망될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되게 됩니다.

인터넷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든 이에게 흥미로운 정보와 통신의 새로운 세계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아동과 성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무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아동 성적 착취 이미지의 유통에 있어서만큼은 아동 성적 착취에 가늠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컴퓨터 기술의 개발, 보급 증대 및 이용은 이들 이미지 유통에 혁신을 가져와, 국경을 초월하여 점점 쉽게 구할 수 있고 유포되고 있으며, 제작 및 배포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런 형태의 아동 성적 착취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으며,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법집행 기관 및 시민사회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글로벌 입법개관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닌, 현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구체적 법률의 부재가 다른 형태의 아동 성적 착취와 아동 학대가 불법화 되어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의 모델 법률은 실제적인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개념들을 집합한 메뉴와도 같습니다.

2006년 4월 처음으로 본 보고서를 출판한 이후 브라질,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이집트, 인도, 몰도바 및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에서 법률의 변화가 있었고 다수의 국가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을 권고하고, 본 보고서의 국제법 편에 기술된 세 가지의 국제조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법률 기구들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초국경적 확산 및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경주하는 노력에도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의 연구, 보고서 및 권고가 국제적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로부터 죄없는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여 제정할 것을 믿습니다.



Ernie Allen, 회장 겸 CEO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 감사의 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련된 국내 법률 연구에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주신 다음의 기관과 개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인터폴
- ❖ 마이크로소프트사
- ❖ 각 국 미국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대사 및 직원들
- ❖ 뉴욕소재 국제연합의 각국 대사 및 직원들
- ❖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국제 법무법인
- ❖ 페놈 펜 관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 및 Carol A. Rodley 대사
- ❖ 전 세계 아동보호에 헌신하는 비정부 및 자선단체
- ❖ ICMEC 의 협조요청에 응락해 준 세계의 다양한 법집행 기관, 경찰 및 변호사들
- ❖ 미 전국 실종 및 학대아동 보호 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직원
- ❖ 국제 실종 및 학대아동 센터 직원, 특히 *글로벌 운영 담당 이사* Jessica Sarra, *쿤 가족재단 국제법 및 정책 총괄부장* Sandra S. Marchenko, *프로그램 매니저* Christina Portz, *법률 인턴* Nina Antony, Elizabeth Sharp, Michelle Kaminsky.

우드 장학재단은 아동 보호에 앞장서는 전 세계적인 선도기관이며 ICMEC 이번 프로젝트를 있게 한 우드재단의 아낌없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발행물에 소개된 관점과 의견은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것이며, 연구를 도와준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공식 입장, 또는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 요약

본 보고서가 2006년 4월 국제 실종 착취 아동센터(ICMEC)에 의해 최초 발표된 후, ICMEC는 현행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국의 정치적 아젠다에서의 중요도 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인터폴 회원 국가에서 현재 시행중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률에 대한 연구를 하었는데, 특히 당해 국가의 법률이 다음 5가지 사항을 포함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1) 특별히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가; (2)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가; (3)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를 법으로 금하는가; (4) 배포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를 법으로 금하는가; (5)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혐의가 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법집행 기관 또는 다른 위임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최종결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인 196개 국가 중,

- ❖ 단지 **45** 개국만이 아동 포르노 범죄와의 투쟁에 충분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오직 **8** 개 국가만이 위에서 기술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며 37 개국은 ISP 보고와 관련된 마지막 기준 (5)를 제외한 모든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 ❖ **89** 개국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있는 인터폴 회원국 중:

- ❖ **52** 개국은 국가 법률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 ❖ **18** 개국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률에 마련되지 않지 않습니다.
- ❖ **33** 개국은 배포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를 법으로 금하지 않습니다.

###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를 암시하고, 아동 희생자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이미지의 진정한 본질과 정도를 적절히 기술하지 않는 바, 보고서 전반에 걸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에서 보이는 성적 행위에 대해 아동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

<sup>1</sup> 본 보고서 초판부터 5 판까지는 인터폴 회원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6 판에서는 전 세계 196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sup>2</sup>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동의 성적 착취 형태를 기술하기에 이 시점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인식되는 표현이기에 계속해서 사용합니다.<sup>3</sup>

본 보고서의 목적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실제 또는 연기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아동이나 주로 성적인 목적을 위해 아동의 성적인 부위를 표현한 것”<sup>4</sup>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나, 위 사항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방법론

국가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4 년입니다. 일차 정보 출처는 다음과 같다-LexisNexis, 국가 아동 성적착취 법률에 관하여 인터폴에서 전에 수행한 회원국 조사서,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UN 보고서와 관련하여 아동 판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UN 특별 보고서에 제출한 정부 자료들, 국가 내 비정부 조직들(NGO), 법 집행 기관들 및 경찰 및 변호사들을 직접 접촉하여 얻은 자료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후, 법적 분석을 수행하여 일차적인 결과를 확립하였습니다. 2006 년 1 월에 워싱턴 DC 소재 인터폴 회원국 대사관의 대사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대사관이 없는 경우, 뉴욕소재 UN 각 국 대표단의 대사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서신은 모델 법률 프로젝트와 국가별 현황 조사 결과 요약본을 첨부했고, 각 국 대사들에게 우리의 연구를 검증하고 정해진 시일까지 필요하다면 수정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9 년 4 월과 11 월 2 회에 걸쳐 ICMEC 은 이번에 발행하는 제 6 판이 최신 정보에 근거한 발행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각 대사관에 다시 서신을 보내 최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 서신으로 인해 각국의 대사관 및 각국 대표부는 제 6 판이 곧 출판될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2006 년에 발송한 서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국 대사관 담당자들은 본 ICMEC 의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특정 기한에 맞추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6 판에 거론된 196 개 국가에 대해 각 국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해당 법률을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

<sup>2</sup> Janis Wolak 등 공저, *인터넷 관련 범죄로 구속된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자: 전국 청소년 온라인 희생자 연구결과 (Child-Pornography Possessors Arrested in Internet-Related Crimes: Findings from the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Study)* 제 7 권 1 호(국제실종 착취아동 센터 출판, 2005). [이하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자라 함]

<sup>3</sup> 상계서.

<sup>4</sup>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정에 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G.A. Res. 54/263, Annex II, U.N. Doc. A/54/49, Vol. III, art. 2, para. C, 2002 년 1 월 18 일 발효[이후 선택의정서라 함].



## 거론된 주제들

본 보고서의 모델 법률 분야에서 거론된 근본 주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1) 성적 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18 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목적상 “아동”으로 정의
- (2)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용어를 포함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 (3)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관람하는 것뿐 아니라 배포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를 법으로 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 형법상에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범죄로 규정
- (4)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는데 동의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보증
- (5) 타인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스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
- (6) 그루밍(grooming) 조항 포함
- (7) 미수 범죄 처벌
- (8) 의료 및 사회 복지 전문가, 교사, 법집행관, 사진 현상업자, 정보기술(IT) 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의 의무적 보고 의무 확립
- (9) 포르노그래피에 관련된 아동들의 형사책임에 관한 조치
- (10) 판결시 재범자, 조직범죄 참여자 및 기타 가중 요인에 대한 형량 강화.

## 모델 법률

아동 포르노그래피와의 전쟁을 목표로 하면서 법집행기관이 범죄자들을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입법 전략은 아동 성행위 범죄자의 특정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뛰어 넘어 더욱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사항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용어의 적절한 정의, 공동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강화된 처벌, 재산 몰수 및 형량 강화.

본 간행물의 모델 법률 요소는 4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정의
- (2) 범죄
- (3) 보고 의무
- (4) 처벌 및 신고

### 정의

*성적 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18 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목적상 “아동”으로 정의한다.*

개인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은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아동을 국제 수준에서 성적 착취로부터 일관성 있게 보호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18 세 미만의 개인이 자유롭게 성관계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한 개인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성적 착취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이 필요한 상황 즉 범죄자가 해외에서 행한 범죄를 본국에서 기소하기 위하여 본국에서도 범죄로 성립해야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일반적 연령의 합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아동 성범죄자의 기소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에 있어 “아동”은 “18 세 미만”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용어를 포함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정의한다.*

국내 법률에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적절하게 정의되어, 범죄자의 인식, 법집행관, 판사 또는 배심원의 입장에서 모호함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법적 정의는 최소한 (실제의 또는 모의의) 성적 노출 또는 행위 또는 연기를 하는 어린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개념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의 성행위, 노골적 성적 행위, 음란 선정적 성기 노출, 성적 노출, 행위 또는 공연 등에 대한 정의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과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 즉 필름, DVD, CD-ROM, 디스켓, CD-R 및 기타 전자적 매체(위 매체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인터넷을 포함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유포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리고 단순히 고의로 인터넷상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보거나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포함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범죄

###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형법에 포함한다.*

특정 형사 범죄, 재제 및 처벌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여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적 착취”에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일반적으로 아동보호법에) 포함시키나, 형사상의 범죄들을 나열하지 않거나 형사상의 형벌을 명기하지 않는 국내 법률 역시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한 조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문제가 아동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첫 단계지만,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범죄이며 또 범죄로 인지되어야 합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의 성적 모욕/희롱/학대/폭행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묘사된 개인이 성인이나 아동이나에 관계없이 포르노그래피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은, 국내 법률에 아동들에게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행한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이 없이는, 본 보고서의 목적상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인 포르노그래피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적절히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배포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를 법으로 금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취득하게 되면 고객의 주문에 맞춘 아동 강간 이미지의 판매와 같은 “주문형”아동 포르노그래피에서부터 유료구독자가 아동 강간이 행해질 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아동 포르노그래피까지를 포함하는 이 불법 산업의 성장을 돕는 셈이 됩니다.<sup>5</sup>

<sup>5</sup> Andrew Vachss, *아동에 대한 이 같은 극악한 범죄와 싸우자 (Let's Fight This Terrible Crime Against Our Children)*, 퍼레이드, 2006년 2월 19일, [http://www.parade.com/articles/editions/2006/edition\\_02-19-2006/Andrew\\_Vachss](http://www.parade.com/articles/editions/2006/edition_02-19-2006/Andrew_Vachss), (2008년 8월 21일 최종 접속)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이미지에 나타난 희생자들의 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이미지는 더욱 시각적으로 생생하고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주재 인터넷 감독 단체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해 2009 년 수집된 자료를 보면, 전체 아동 포르노그래피 중 10 세 이하로 보이는 아동이 72%, 6 세 이하가 23%, 그리고 두 살 혹은 그 이하가 3%를 차지했습니다.<sup>6</sup> 게다가, 가장 끔직한 형태의 아동 성학대 이미지는 2003 년 7%에서 2006 년에는 29%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점점 더 자극적인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sup>7</sup> 2009 년에 IWF 가 44%의 성학대 이미지가 아동 강간이나 고문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8</sup>

미국 외에서 행해진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체포된 사람 중 83%가 6 살에서 12 살 사이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고 있었고, 39%가 3 살에서 5 살 어린이의 것을, 또 19%는 3 살 이하 유아의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sup>9</sup> 체포된 이의 92%가 아동의 성기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나 성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소지하고 있었고, 80%는 아동에게 오랄 섹스를 비롯한 성기삽입이 이뤄지는 이미지를 소지했으며 21%는 강간, 신체결박 혹은 고문 등을 묘사하는 내용을 소지했습니다.<sup>10</sup> 이러한 대부분의 이미지는 아동에 재갈을 물리거나, 신체를 결박하고, 눈을 가리거나 혹은 가학적인 성적 학대를 묘사하는 이미지였습니다.<sup>11</sup> 같은 조사에서, 체포된 이의 40%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한 이중 범죄자였습니다.<sup>12</sup> 이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적 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sup>6</sup> 인터넷 감시재단, 2009 년 제 18 호 연례자선보고서, <http://www.iwf.org.uk/assets/media/annual-reports/IWF%202009%20Annual%20and%20Charity%20Report.pdf> (2010 년 1 월 28 일 최종접속)(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이후 IWF 2009 라 함].

<sup>7</sup> 인터넷 감시재단, 2006 년 제 19 호 연례자선보고서(국제실종 착취아동센터에서 파일 보관 중).

<sup>8</sup> 인터넷 감시재단(IWF 2009), 전계서 14 쪽.

<sup>9</sup> Janis Wolak 등 공저, 전계서 4 쪽.

<sup>10</sup> 상계서 5 쪽.

<sup>11</sup> 상계서 5 쪽.

<sup>12</sup> 상계서 8 쪽.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 이미지의 다운로드, 관람 및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배포를 법으로 금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관람, 다운로드, 배포, 취득 및 교환합니다. 따라서, 앞서 진술한 대로, 한편으론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관람, 소지 또는 배포에 대해, 다른 한편으론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저지르는데 컴퓨터나 인터넷 기술이 이용되고 있음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관람하는 것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관람과 다운로드 모두 별개의 범죄로 법으로 금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스를 알려주는 자를 처벌한다.**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 포르노그래피 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처벌해야 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불법 내용물의 소지나 다운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범죄를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나 다운로드) 조장하는 개인은 최소한 벌금형에는 처해져야 합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동의하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의 행동을 법으로 금한다.**

범죄 수행을 돕고 조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녀가 포르노그래피에 참여하도록 동의하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다수의 범죄 수행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행해지는 강간, 성적 착취, 성폭행, 성적 학대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아동의 운전을 법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아동의 포르노그래피 출연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동을 포르노그래피 산업에 출연시키는 것은, 금전적인 영리를 목적 여부를 떠나, 신뢰 관계 및 부모의 임무와 책임을 궁극적으로 기만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전반적인 복지를 위협하므로, 그러한 남용과 학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루밍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그루밍은 아동 성범죄자가 성적인 관계를 위하여 아동을 “준비”시키는 초기 활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2 가지 형태의 그루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에게 (성인이나 아동의)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거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위한 아동의 온라인 유혹은 아동 성범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행위를 위해 만나도록 유인, 초대 또는 설득할 때 이루어지는데,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동의 신뢰를 얻은 후 직접 대면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M), 온라인 게시판 및 대화방을 이용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성인이나 아동의)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어 아동의 심리적 억제를 낮추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을 성행위로 인도하게 됩니다.<sup>13</sup>

온라인 그루밍 또는 온라인 유혹에 관한 법률 제정은 잠재적인 아동 성범죄자들을 식별하고 후에 아동의 희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미수 범죄를 처벌한다.**

미수범을 유죄 처리하는 근본이유는 범행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개인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미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법집행기관과 사회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조기 경고로 작용하여, 범죄자에 첫 번째 과실부터 미완성의 범죄도 용납되지 않고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게 되고, 범죄 억지 효과를 통해 더욱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보고 의무**

###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사법 당국이나 기타 관련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 교사, 사법당국, 사진 전문가, IT 전문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 회사 및 은행의 협력 필요성**

의심스런 아동 포르노그래피 활동과 범죄행위를 법집행기관 또는 기타 위임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는 개인과 기관을 3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일상의 전문적인 업무에서 아동과 접촉하고 이들 아동들을 보살필 일종의 의무가 있는 개인들
- (2) 일상의 전문적인 업무에서 아동들과의 접촉은 없으나 그들의 업무활동 결과로서 잠재적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접할 수 있는 개인들.
- (3) 매일의 사업 운영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 활동 증가에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일정량의 산업의무/기업시민/기업 사회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조직 또는 기업들.

<sup>13</sup> Kim-Kwang Raymond Choo,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자의 온라인 그루밍에 악용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문헌적 검토 7-8* (103 AIC Report, 2009), <http://www.aic.gov.au/documents/3/C/1/%7B3C162CF7-94B1-4203-8C57-79F827168DD8%7Drpp103.pdf>

첫 번째 그룹은 매우 자명한데, 이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료 및 사회 복지 전문가, 교사, 학교 상담자 및 법집행관을 포함하나 이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동들과 매일 접촉함으로써, 이들 개인들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잠재적인 아동 희생자에 대한 혐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진 현상업자와 IT 전문가들이며, 이들은 필름 현상, 의뢰된 컴퓨터 수리 및 사무실에서 기업컴퓨터를 서비스하며 아동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개인들은 불법 자료를 검색할 의무는 없으나,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사와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기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이거나 법적의무에 의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다수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에 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유통의 주요 방법이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혐의가 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법 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및 차단(takedown)” 의무는 국내 법률에 제정되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경찰 및 기타 법집행 기관에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이미지를 신고하는 등의 여타 신고를 실시할 시 법기관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해서는, 신용카드 및 기타 지불 수단의 발달로 인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구입이 매우 용이해 졌음을 염두에 두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수천 혹은 수백만의 인구가 아동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 기관들은 이러한 현실을 숙지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포에 관한 주도적인 자세로 사법당국이나 이와 관련한 기관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처벌 및 신고

### *포르노에 관련된 아동들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조치한다.*

포르노그래피에 관련된 아동들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어야 하며, 이는 각 국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순종한 희생자이거나 비협조적인 목격자이든지에 관계없이, 아동 희생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아동 착취에 책임이 있는 성인 범죄자와 해당 범죄자가 아동에게 범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재판절차에서든 목격자로서 아동 희생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에는 상황에 따라 특정인만을 위한 증언을 허락하고 법정에 희생자 변호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립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판결시 재범자, 조직범죄 참여자 및 기타 요인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

제정된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률의 위반은 모두 최대한의 엄중한 형벌에 처해야 하고, 그 결과로 진정한 범죄 억지 효과를 유도해야 합니다.<sup>14</sup> 단순한 벌금형이나 경범죄 처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고조항들은 가장 요인들과 양형 강화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sup>15</sup> 가장요인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조/제작/배포/소지한 이미지의 숫자, 범죄자의 기존 범죄기록의 심각성, 제조/제작/배포/소지한 이미지에 묘사된 (강간, 고문 및 속박을 포함하여) 아동을 향한 성적 폭력, 그리고 범죄자가 석방 후 사회에 제기할 만한 모든 잠재적인 위협이나 위험.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조직범죄<sup>16</sup> 및 테러집단<sup>17</sup>들이 활동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적극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sup>18</sup> 이에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어린이의 수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제작이 쉽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게다가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대규모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 그에 따르는 수익은 천문학적이라는 점, 또한 무기나 마약 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이라는 점 등입니다. 조직범죄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 또한 범죄 억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실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가 감옥에서 형량을 받게 되는 선례를 보인다면 만연한 조직범죄의 흐름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sup>14</sup> Eva J. Klain, *아동 매춘 및 아동 섹스 관광(Prostitution of Children and Child-Sex Tourism): 국내 및 국제 반응 분석(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ponses)* 47 (실종 착취 아동 센터 출판, 1999년) [이하 *아동 매춘 및 아동 섹스 관광*이라 함].

<sup>15</sup> 상계서.

<sup>16</sup> AM with Tony Eastley, *일본 조직범죄집단 야쿠자와 아동 포르노그래피*(호주 라디오방송 2009년 10월 20일) <http://www.abc.net.au/am/content/2009/s2718553.htm> (2010년 1월 28일 최종 접속)(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17</sup> Richard Kerbj & Dominic Kennedy, *경찰 단속에서 드러난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연관성*(타임지 온라인판 2009년 10월 7일)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uk/crime/article4959002.ece> (2010년 6월 28일 최종접속) [이하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테러리스트라 함*].

<sup>18</sup> Sergey Stefanov, *러시아의 인터넷 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프라브다 2002년 12월 4일) <http://english.pravda.ru/hotspots/terror/04-12-2002/1620-porn-0/> (2010년 6월 28일 최종접속)(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Eva J. Klain, 전계서 47 쪽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유죄 선고된 피고인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활동으로 얻은 재산, 수입 또는 자산의 몰수를 허락하는 몰수조항이 있어야 합니다.<sup>19</sup> 몰수된 자금은 역으로 이전에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 성적 착취의 위험에 처한 아동 그리고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 희생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sup>20</sup>

---

<sup>19</sup> Eva J. Klain, 전계서 47 쪽

<sup>20</sup> 상계서.

## 국제법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국제적 접근이 요구되는 다수 국가의 관할권이 겹쳐있는 문제입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아동 착취에 대한 투쟁의 국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법률이 필요한데, 국가마다 다른 법률들은 아동 성적 착취에 대항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아동 약탈자들이 아동 착취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국가들에서 노력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이고 일률적인 접근은 아동의 성적 착취 투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범죄화와 처벌을 일관화하고, 문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경각심을 높이며,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전체적인 법집행의 노력을 개선합니다. 국제 법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투쟁하기 위한 국가적 법률의 시행과 국가적인 입법체계의 확립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다루는 3 가지 주요 국제적 법적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 권리 협약(유엔)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sup>21</sup>;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sup>22</sup>; 아동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sup>23</sup> 이 3 개협정 모두 아동의 성적 착취 및 학대와 투쟁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또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무적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가해자의 효과적인 기소를 돕습니다. 아동 보호에 대한 선택의정서 및 협정은 또한 정부들이 아동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확립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기구의 포괄적인 표본으로서 이용됩니다.

###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 의정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정(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sup>24</sup>은 공민, 문화,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권리<sup>25</sup>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CRC 및 CRC 에 대한 선택

<sup>21</sup> 선택의정서, 이전 각주 4.

<sup>22</sup>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2001년 11월 23일,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85.htm> (2008년 8월 21일 마지막 방문)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23</sup> 아동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007년 10월 25일,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201.htm> (2010년 6월 28일 마지막 방문) (국제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24</sup>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A. Res. 44/25, 61st plen. mtg., U.N. Doc. A / RES / 44 / 25 (1989년 11월 20일), 1992년 9월 2일 발효[이하 CRC].

의정서내에 아동 성적 착취를 다루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CRC 제 34 조는 아동의 성적 착취 해소를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협정 당사국은 특히 포르노그래피 행위나 자료에서 아동의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양자적, 다자적 조치를 취한다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CRC 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는 2002 년 1 월 18 일에 발효되었는데,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2(c)조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방법과 관련 없이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아동이나 주로 성적인 목적을 위해 아동의 성기관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 ❖ 제 3(1)조는 협정 당사국은 개인적인 기반 또는 조직적인 기반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행해진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 ❖ 제 3(1)(c)항은 협정 당사국은 배포의 의도와 관계없이 단순한 소지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 ❖ 제 3(4)항은 법인의 책임을 다루며 각 협정 당사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조항은 포괄적인 접근은 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요점을 반영한다.
- ❖ 제 10(1)항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룬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국경을 넘어 쉽게 배포된다. 국제적 협조 없이는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를 회피할 수 있다.

##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정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희생자들과 다른 사법 관할권(예, 국가들)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회는 사이버 범죄 기소에 협조적이고 일률적인 접근을 수행하려는 바램을 가지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정(사이버 범죄 협정)을 확립하였는데, 유럽의회 회원국들과 동 협정의 완성에 참여한 비회원국들의 승인 및 기타 비회원국들은 사이버 범죄 협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 개국 (29 개 회원국과 1 개 비회원국)이 사이버 범죄 협정을

<sup>25</sup> UNICEF,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정(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참조, (2010 년 6 월 28 일 최종 접속)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비준하였으며, 16 개 국가(13 개 회원국과 3 개 비회원국)가 사이버 범죄 협정을 가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습니다.<sup>26</sup>

아동 성적 착취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버 범죄 협정 제 3 편 “내용 관련 범죄들”이고, 특히 제 3 편 제 9 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 ❖ 제 9(1)항은 협정 당사국이 다음 사항들을 범죄행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배포를 목적으로 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공이나 제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유통 또는 전송, 본인이나 타인을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입수,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나 컴퓨터 데이터 저장 매체에 아동 포르노그래피 보관.
- ❖ 제 9(2)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에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노골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실제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포르노그래피 자료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 ❖ 제 9(3)항은 “‘미성년자’ 용어는 18 세 이하의 모든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연령제한을 16 세 이상에 한해 낮출 수 있다”.
- ❖ 제 11 항은 협정 당사국이 협력이나 교사죄뿐만 아니라 미수범죄를 다룬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 ❖ 제 13(1)항은 의무조항으로서 협정 당사국은 범죄는 “자유의 박탈을 포함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제재에 의한 처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 ❖ 제 12(1)항은 기업 책임을 다룬다.
- ❖ 제 23 항은 국제적 협력 이슈를 다룬다.

##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정(아동 보호 협정)은 최신의 국제적 법적 장치로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는 아동의 성적 착취와의 투쟁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 보호 협정은 학대와 착취의 예방, 희생자 보호 및 지원, 범죄자 처벌, 및 국가 및 국제적인 법집행기관의 협조 증대를

<sup>26</sup>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회의 협정(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CETS 185) 참조: 동의 및 비준 도표,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ChercheSig.asp?NT=185&CM=&DF=&CL=ENG> (2010 년 10 월 13 일 마지막 방문)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중).

통해 아동의 최대 이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협정은 2007년 10월 25일 서명을 시작하여 2010년 7월 1일 효력 발생을 시작하였는데, 협정의 구상에 참여한 회원국가와 비회원 국가, 유럽 연합 각국은 서명 권한이 있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비회원국가 역시 동 협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국가가 아동보호협정을 비준하였고, 32개 국가는 서명을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습니다.<sup>27</sup> 아동 포르노와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제 20(1)항은 협정 당사국은 다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 아동 포르노의 제공이나 제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배포 또는 전송, 본인이나 타인을 위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입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에의 자발적 접근.
- ❖ 제 20(2)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모든 자료나 일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관을 묘사한 모든 것”으로 정의한다.
- ❖ 제 21(1)항은 협정 당사국은 아동을 모집하거나 강제로 아동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참여시키거나,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활동을 금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 제 24 항은 협력이나 교사죄뿐만 아니라 미수범죄를 다룬다.
- ❖ 제 26(1)항은 기업책임의 이슈를 다룬다.
- ❖ 제 38(1)항은 국제적 협력의 이슈를 다룬다.

---

<sup>27</sup>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CETS 201) : 서명 및 비준국 현황 참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ChercheSig.asp?NT=201&CM=8&DF=09/11/2010&CL=ENG> (2010년 11월 9일 최종 검색)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 글로벌 입법 개관

✕ = 아니오

✓ = 예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sup>28</sup>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권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sup>29</sup>	단순 소지 <sup>30</sup>	ISP 보고 <sup>31</sup>
가나	✕	✕	✕	✕	✕
가봉	✕	✕	✕	✕	✕
가이아나	✕	✕	✕	✕	✕
감비아	✓	✕	✕	✕	✕

<sup>28</sup> 본 보고서의 목적상, 아동 포르노그래피 위반을 금하고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요구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여 단순히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단순한 노동법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묘사된 개인이 성인이나 아동이냐에 관계없이 포르노그래피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은, 아동희생자들에게 행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강화가 없으면,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up>29</sup>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라 함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 또는 유사한 용어를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에 “컴퓨터 이미지”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언급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말한다. 다른 용어가 국가 법률에서 사용된 경우, 이를 설명하는 각주가 제공될 것이다.

<sup>30</sup> “단순 소지”는 본 보고서의 목적상 배포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sup>31</sup> 일부 국가는 일반적인 보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절한 기관에 범죄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하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혐의가 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법집행기관에 (또는 다른 위임기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국가들만 ISP 보고 법률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몇몇 국가 법률에 (대부분 유럽 연합 내에) ISP가 불법 내용물의 존재를 알았을 때 해당 내용물을 제거하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법률은 이 섹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교황청	✓	✗	✓	✓	✗ <sup>33</sup>
과테말라	✓	✗	✓	✓	✗
그레나다	✗	✗	✗	✗	✗
그리스	✓	✓	✓ <sup>34</sup>	✓	✗
기니비사우	✗	✗	✗	✗	✗
기니아	✗	✗	✗	✗	✗
나미비아	✗	✗	✗	✗	✗
나우루	✗	✗	✗	✗	✗
나이지리아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

<sup>33</sup> 바티칸 시국은 외부로부터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아동 포르노그래피 뿐만 아니라 포르노그래피와 연관된 어떠한 웹사이트도 접근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바티칸 시국의 웹사이트는 공식적인 제도이므로 바티칸 시국의 존재목적에 합당한 내용만이 포함되어있다. 이 내용은 2006년 6월 5일 재미 교황청 대사관 로마 교황 대사 Pietro Sambi 대주교가 ICMEC 회장이자 CEO 인 Ernie Allen 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sup>34</sup> 그리스의 형법 제 348a 는 “모든 방법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구매, 양도 및 판매를 포함하여 다양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네덜란드	✓	✓	✓	✓	✗ <sup>35</sup>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sup>36</sup>	✗	✗	✗	✗	✗
네팔	✓	✗	✗ <sup>37</sup>	✗	✗
노르웨이	✓	✓	✓	✓	✗
뉴질랜드	✓	✓	✓	✓	✗ <sup>38</sup>

<sup>35</su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혐의가 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법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없지만,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발견 즉시 법 집행기관에 보고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관계된 웹사이트에서 내용을 제거한다. 더구나,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혐의가 가는 웹사이트에 관한 일지를 제출한다. 워싱턴 디씨 소재 네덜란드 왕립대사관의 공안 및 법률 담당 참사관 Richard Gerding 이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이메일(2006년 2월 8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36</sup> 네덜란드령 안틸 제도는 2010년 10월 10일에 분리되었다. 애초 카리브 해의 5개 섬으로 구성되었던 안틸 제도가 네덜란드 내 하나의 독립 자치구로 변화된 것이다. 분리와 더불어 보네르 섬, 사바, 그리고 신트 에우스타티우스는 네덜란드의 특별 자치구가 되고, 쿠아르사오와 신트 마르텐은 네덜란드내 독립국가가 되었다.

<sup>37</sup> 2004년의 전자 거래법 섹션 47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공 도덕이나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이유로 공표나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자료를 컴퓨터,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매체에 공표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금한다.

<sup>38</sup> 뉴질랜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신고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뉴질랜드 내무부는 웹사이트 여과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는 곧 디지털 아동 착취 방지 여과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위한 시스템이다. 인터넷 사업 제공자의 참여가 자발적이긴 하나, 내무부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제공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인터넷 사용자가 이 디지털 아동 착취 방지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재미 뉴질랜드 대사관 Roy Ferguson 대사가 2009년 12월 11일 ICMEC 전 정책 부장인 Maura Harty 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니제르	✗	✗	✗	✗	✗
니카라과	✓	✓	✓	✓	✗
덴마크	✓	✓	✓ <sup>39</sup>	✓	✗
도미니카	✗	✗	✗	✗	✗
도미니카 공화국	✓	✓	✓	✓	✗
독일	✓	✓	✓	✓	✗ <sup>40</sup>
동티모르	✗	✗	✗	✗	✗
라오스	✓	✗	✓	✗	✗
라이베리아	✗	✗	✗	✗	✗
라트비아	✓	✓	✓ <sup>41</sup>	✓	✗

<sup>39</sup> 덴마크 형법 235 조는 특히, 18 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포르노그래피 자료의 “기타 시각적 재생”의 유포 및 소지를 법으로 금한다.

<sup>40</sup> 독일 법상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사법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해당사항을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자사 웹사이트에 존재함을 인지한 후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할 수 있다. 이때 고려사항은 해당 업체가 해당 게시물 인지하고 그것을 삭제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 지인데, 이는 독일에서는 상당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아주 방대한 양의 게시물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6 년 2 월 ICMEC 경영부장 Jessica Sarra 에게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관의 영사 Klaus Hermann 이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sup>41</sup> 라트비아의 형법 제 166(2)항은 “아동의 성적인 학대와 관련되었거나 표현한 포르노그래피 자료의 수입, 생산, 공적인 디스플레이, 광고 또는 기타 유통”을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러시아	✓	✗	✗	✗	✗
레바논	✗	✗	✗	✗	✗
레소토	✗	✗	✗	✗	✗
루마니아	✓	✓	✓	✓	✗ <sup>42</sup>
룩셈부르크	✓	✗	✓ <sup>43</sup>	✓	✗
르완다	✗	✗	✗	✗	✗
리비아	✗	✗	✗	✗	✗
리투아니아	✓	✗	✗	✓	✗
리히텐슈타인	✓	✗	✓	✓	✗ <sup>44</sup>

<sup>42</sup> 루마니아 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의심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몇몇의 법은 존재한다. 해당 보고서들은 통신정보사회부에 보고 되게 되는데 해당 기관이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내용은 쿤 가족 재단 산하 ICMEC 국제 법 및 정책 담당 부장 Sandra Marchenko 앞으로 워싱턴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 3 등 서기관 Serban Brebenel 이 보낸 공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2009 년 12 월 4 일)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sup>43</sup> 룩셈부르크의 형법 제 383 항은 “포르노그래피 성격의 작문, 인쇄, 이미지, 사진, 필름 또는 기타 객체”를 (거래, 유통 또는 공적인 디스플레이 목적) 제조 및 소지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기타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sup>44</sup> 리히텐슈타인의 형법은 ISP 보고를 특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새로운 아동 및 청소년 법의 초안에 보고 요건이 예상되며,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지를 위협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다. 워싱턴 디씨 소재 리히텐슈타인 대사관의 대사 Claudia Fritsche 가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이메일(2006 년 2 월 7 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마다가스카르	✓	✗	✓ <sup>45</sup>	✗	✗
마셜제도	✗	✗	✗	✗	✗
마케도니아	✓	✗	✓ <sup>46</sup>	✗	✗
말라위	✗	✗	✗	✗	✗
말레이시아	✗	✗	✗	✗	✗
말리	✓	✗	✗	✗	✗
말타	✓	✗	✓	✓	✗
멕시코	✓	✓	✓	✓	✗
모나코	✓	✓	✓	✓	✗
모로코	✓	✗	✗	✓	✗
모리셔스	✓	✗	✓	✗	✗
모리타니아	✗	✗	✗	✗	✗

<sup>45</sup> 마다가스카르 형법 제 346 항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sup>46</sup> 마케도니아 형법 제 193(3)항은 “기타 포르노그래피 내용 제조”에서 “청소년” 학대를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모잠비크	×	×	×	×	×
몬테네그로	✓	×	✓ <sup>47</sup>	×	×
몰도바	✓	✓	✓	✓	×
몰디브	×	×	×	×	×
몽골	×	×	×	×	×
미국	✓	✓	✓	✓	✓
미얀마	✓	✓	✓	×	×
미크로네시아	×	×	×	×	×
바누아투	✓	✓	✓	✓	×
바레인	×	×	×	×	×
바베이도스	✓	✓	✓	✓	×
바하마	×	×	×	×	×
방글라데시	×	×	×	×	×

<sup>47</sup> 몬테네그로 형법 제 211(2)항은 “포르노그래피 내용의 사진, 시청각 또는 기타 품목의 제작을 위한 아동의 착취”를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버키나-파소	×	×	×	×	×
베네수엘라	✓	✓	✓	×	×
베닌	×	×	×	×	×
베트남	×	×	×	×	×
벨기에	✓	✓	✓ <sup>48</sup>	✓	✓
벨라루스	✓	×	×	×	×
벨리즈	×	×	×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sup>49</sup>	✓	×
보츠와나	✓	✓	✓	✓	×
볼리비아	×	×	×	×	×
부룬디	×	×	×	×	×

<sup>48</sup> 2001년 4월 1일 개정 벨기에 형법 제 383bis 조항은,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유포를 포함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포를 법으로 금한다. 워싱턴 DC 소재 벨기에 대사관 부대사 Jan Luykx 가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 회장 겸 CEO Ernie Allen 에게 보내 편지(2006년 2월 24일)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49</sup>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형법 제 189 와 211 항은 포르노그래피와 오디오-비디오 테이프에 추가로 “기타 포르노그래피 자료”를 언급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부탄	✓	✗	✓ <sup>50</sup>	✗	✗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	✗	✗	✗
불가리아	✓	✗	✓ <sup>51</sup>	✓	✗
브라질	✓	✓	✓	✓	✗ <sup>52</sup>

<sup>50</sup> 부탄 형법 제 225(b)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적 접촉중인 아동을 묘사한 자료를 판매, 제조, 배포하거나 기타 자료를 다루었다면 피고인은 성도착 유죄이다.”

<sup>51</sup> 불가리아 형법 제 159(3)은 제 159(1)과 관련시켜 해석할 때, 여러가지 중에서도, “그 외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포”를 법으로 금한다.

<sup>52</sup> 아동 및 청소년 법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배포하는 수단이나 서비스 제공을 형사처벌 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수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배포시키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신고 받은 사법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지속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당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음에도 사법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관 소속 Alexandre Ghisleni 가 쿤 가족 재단 산하 ICMEC 국제 법 및 정책 담당 부장 Sandra Marchenko 앞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2009 년 5 월 13 일)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브루나이	✓	✗	✓	✗	✗ <sup>53</sup>
사우디 아라비아	✗	✗	✗	✗	✗
사모아	✗	✗	✗	✗	✗
산마리노	✓	✓	✓	✗	✗
상투메 프린시페	✗	✗	✗	✗	✗
세네갈	✗	✗	✗	✗	✗
세르비아	✓	✗	✓ <sup>54</sup>	✗	✗
세이셸	✓	✗	✓	✓	✗

<sup>53</sup> ISP에 특정한 의무보고 조건은 없지만, 브루나이 법에 따라 2001년 방송(클래스 인가) 공고 하에 인가받은 모든 ISP 및 인터넷 내용물 제공업자(Internet Content Provider, ICP)들은 방송법(Cap 181)에 제시된 업무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ISP 및 ICP들은 방송 관련 장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필수요건을 만족시킬 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해당 장관은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허용되지 않아야 할 내용에는 소아성애의 묘사나 선전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가 업무규정에 어긋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대중의 이익, 공공질서 또는 국가 화합에 반하거나 세련되지 못하거나 예외에 어긋나는 경우, 장관이 인가받은 사람에게 이를 통보하면 인가받은 이는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에서 제거하거나 금해야 한다.

인가받은 사람은 또한 방송에 책임이 있는 장관을 도와, 인가사항 위반이나 인가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추정되는 범위반에 대한 조사를 도와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장관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기록, 문서,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 디씨 소재 브루나이 대사관 제 2 서기관 Salmaya Salleh가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에게 보낸 이메일(2006년 3월 21일) (국제 실종 착취 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54</sup> 세르비아 형법 제 111a는 포르노그래피 품목을 만들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진, 필름, 또는 기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추가로, 제 185항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포르노그래피 내용의 사진, 시청각 또는 기타 품목”의 제작을 법으로 금한다.

<u>국가</u>	<u>구체적인 이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u>	<u>“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u>	<u>컴퓨터를 이용한 범죄</u>	<u>단순 소지</u>	<u>ISP 보고</u>
세인트 루시아	✗	✗	✗	✗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	✗	✗	✗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	✗	✗	✗	✗
소말리아	✗	✗	✗	✗	✗
솔로몬 제도	✗	✗	✗	✗	✗
수단	✗	✗	✗	✗	✗
수리남	✓	✗	✓	✓	✗
스리랑카	✓	✗	✗	✓	✗
스와질랜드	✗	✗	✗	✗	✗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스웨덴	✓	✗	✓ <sup>55</sup>	✓	✗ <sup>56</sup>
스위스	✓	✓	✓	✓	✗ <sup>57</sup>
스페인	✓	✗	✓ <sup>58</sup>	✓	✗
슬로바키아	✓	✓	✓	✓	✗

<sup>55</sup> 스웨덴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필요조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법제화도 예외는 아니며, 따라서 스웨덴 형법 제 16 장 섹션 10a 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도 확대된다. 워싱턴 디씨 소재 스웨덴대사관의 일등서기관 Anette Nilsson 이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편지(2006 년 2 월 23 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56</sup> 1998 년, 스웨덴은 전자 게시판 시스템(Bulletin Board System: BBS) 책임 법령(1998:112)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BBS 공급업자가 BBS 내용을 감독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확산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BBS 공급업자는 또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메시지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의 유포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워싱턴 디씨 소재 스웨덴대사관의 일등서기관 Anette Nilsson 이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편지(2006 년 2 월 23 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57</sup>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의심되는 내용을 감시하거나 신고할 법적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는 스위스 사이버 범죄 통합 위원회(CYCO)라는 특별 단체를 구성했는데 개인이 의심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CYCO 는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활동도 벌이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까지 행하는 기관이다. 스위스 국민은 CYCO 에 개인적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약 80%의 스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CYCO 의 활동에 협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워싱턴 주재 스위스 대사관 대사 Urs Ziswiler 가 ICMEC 전 정책부장 Maura Harty 에게 보낸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 (2010 년 1 월 22 일)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sup>58</sup> 스페인의 형법 제 189(1)(a)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자료의 제작”을 법으로 금한다. 제 189(1)(b)는 “어떤 방법으로든” “형태를 막론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 판매, 유통, 디스플레이, 또는 제작, 판매, 유포 또는 공개를 촉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그리고 제 189(7)항은 전에 사용되었던 용어 “형태를 막론하고” 및 “어떤 방법으로든”을 반복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슬로베니아	✓	✗	✓ <sup>59</sup>	✓	✗
시리아	✗	✗	✗	✗	✗
시에라리온	✗	✗	✗	✗	✗
싱가포르	✗	✗	✗	✗	✗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	✗	✗	✗
아루바	✓	✗	✓	✓	✗
아르메니아	✓	✗	✓	✗	✗
아르헨티나	✓	✓	✓	✗	✗
아이슬란드	✓	✗	✓ <sup>60</sup>	✓	✗
아이티	✗	✗	✗	✗	✗

<sup>59</sup> 슬로베니아 형법 제 187(2)는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포르노그래피 성격의 사진, 시청각, 또는 기타 품목을 제작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제 187(3)항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포르노그래피 자료들을] 제작, 유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공급하거나, 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런 자료를 제작, 유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공급할 의도로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들을 법으로 금한다.

<sup>60</sup> 아이슬란드의 형법 제 210 항은 “아동을 성적 또는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사진, 필름, 또는 유사한 품목의 소지”를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아일랜드	✓	✓	✓	✓	✗
아제르바이잔	✗	✗	✗	✗	✗
아프카니스탄	✗	✗	✗	✗	✗
안도라	✓	✗	✗	✗	✗
안티구아 바부다	✗	✗	✗	✗	✗
알바니아	✗	✗	✗	✗	✗
알제리	✗	✗	✗	✗	✗
앙골라	✗	✗	✗	✗	✗
에리트레아	✗	✗	✗	✗	✗
에스토니아	✓	✗	✓ <sup>61</sup>	✓	✗
에콰도르	✓	✗	✗	✗	✗
에티오피아	✗	✗	✗	✗	✗

<sup>61</sup> 에스토니아 형법 제 177 항 및 178 항은 미성년자를 “기타 행동”에 이용하거나 또는 “모든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조, 저장, 양도, 전시, 또는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엘살바도르	✓	✓	✓	✓	✗
영국 <sup>62</sup>	✓	✓	✓	✓	✗ <sup>63</sup>
예멘 아랍 공화국	✗	✗	✗	✗	✗
오만	✗	✗	✗	✗	✗
오스트리아	✓	✓	✓ <sup>64</sup>	✓	✗
온두라스	✓	✗	✓	✓	✗
요르단	✗	✗	✗	✗	✗
우간다	✗	✗	✗	✗	✗

<sup>62</sup>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를 법률로 금한다.

<sup>63</sup> 영국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법집행기관 등에 보고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당해 이미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 은닉되어 있는 경우 제 3 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관할권은 당해 이미지의 소지, 보관은 서버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당해 이미지 등의 소지가 불법이어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아동학대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에 신고를 할 것이다. (워싱턴 D.C. 주재 영국 대사관 고문 Nick Lewis 가 국제실종아동센터의 Maura Harty 에게 보낸 편지(2009 년 12 월 16 일)(국제 실종 착취아동센터에서 파일 보관 중)

<sup>64</sup> 오스트리아 형법 제 207a(1)(3)항은 “미성년자의 외설적 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우루과이	✓	✓	✓ <sup>65</sup>	✗	✗
우즈베키스탄	✗	✗	✗	✗	✗
우크라이나	✓	✓	✓	✓	✗
이라크	✗	✗	✗	✗	✗
이란	✗	✗	✗	✗	✗
이스라엘	✓	✓	✓	✓	✗
이탈리아	✓	✓	✓	✓	✓
이집트	✓	✗	✓	✓	✗
인도	✓	✗	✓	✓	✗
인도네시아	✓	✓	✓ <sup>66</sup>	✓	✗
일본	✓	✓	✓	✗	✗

<sup>65</sup> 우루과이 법 17.815는 어떻게 범행이 일어났는가에 관계없이 특정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법으로 금한다(예, 제 1 항: “어떤 방법으로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고 제작하는 것”, 제 2 항: “어떤 방법으로든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상업화, 확산, 공개, 저장 또는 획득을 촉진하는 것”).

<sup>66</sup> 인도네시아 포르노그래피 금지 법 제 1 조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매체 또는 방법에 의한 통신”에 의해 제작된 포르노그래피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자메이카	✓	✓	✓	✓	✗
잠비아	✗	✗	✗	✗	✗
적도 기니	✗	✗	✗	✗	✗
조지아 (그루지아)	✓	✓	✗	✗	✗
중국	✓ <sup>67</sup>	✗	✓ <sup>68</sup>	✗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	✗	✗	✗
지부티	✗	✗	✗	✗	✗
짐바브웨	✗	✗	✗	✗	✗

<sup>67</sup> 중국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법률이 없지만, 형법에 음란하고 도색적인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2004년,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보호국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이동 통신 터미널, 라디오 방송국을 이용한 전자 포르노그래피 정보의 생산, 복제, 출판, 판매, 유포와 관련된 범죄사례를 다룸에 있어 법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해석”을 법령으로 공포하였다. 이 해석의 제 6 항은 “18 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전자 포르노그래피 정보를 유포, 복제, 출판 또는 판매하는 자들이나, 18 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전자 정보에 대한 링크를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스스로 소유, 관리, 또는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나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자들은 포르노그래피 자료의 생산, 복제, 출판, 판매 및 유포 범죄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 363 항, 또는 심각한 포르노그래피 자료 유포 범죄의 처벌에 관한 제 364 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워싱턴 디씨 소재 중국대사관의公安연락관 첸 핑이 실종 및 착취 아동 국제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이메일(2006년 3월 17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sup>68</sup>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보호국의 2004년 해석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차드	✗	✗	✗	✗	✗
체코 공화국	✓	✗	✓	✓	✗
칠레	✓	✓	✓	✓	✗
카메룬	✗	✗	✗	✗	✗
카보베르데	✓	✗	✗	✗	✗
카자흐스탄	✓	✗	✗	✗	✗
카타르	✓	✗	✓ <sup>69</sup>	✗	✗
캄보디아	✓	✓	✓	✗	✗
캐나다	✓	✓	✓	✓	✗ <sup>70</sup>
케냐	✓	✗	✓ <sup>71</sup>	✗	✗

<sup>69</sup> 카타르 형법 제 292 항은 특정적으로 “책자, 출판물, 기타 문자 자료, 그림, 사진, 필름, 상징물, 또는 기타 품목”을 언급한다.

<sup>70</sup> 2009 년 12 월 법 C-58 : 아동 보호법 (온라인 성착취 방지 법)이 캐나다 의회에 상정되었고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sup>71</sup> 케냐 반 성범죄 법 제 16 조 1 항 (aa)에 따르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아동 포르노 그래피를 팔거나,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코모로	×	×	×	×	×
코소보	✓	×	×	✓	×
코스타리카	✓	✓	✓ <sup>72</sup>	✓	×
코트디부아르	×	×	×	×	×
콜롬비아	✓	✓	✓	✓	✓
콩고	×	×	×	×	×
콩고 민주 공화국	✓	✓	✓ <sup>73</sup>	×	×
쿠바	×	×	×	×	×
쿠웨이트	×	×	×	×	×
크로아티아	✓	×	✓	✓	×
키리바시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sup>72</sup> 코스타리카가 형법 제 174 조에 의하면 “포르노 물품 제작, 배포, 제공,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

<sup>73</sup> 콩고 민주공화국 형법 제 174 항은 “어떤 형태로든 아동 포르노 그래피가 묘사되는 것”을 범죄화 하고 있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키프러스	✓	✓	✓	✓	✗
타지키스탄	✓	✗	✗	✗	✗
탄자니아	✗	✗	✗	✗	✗
태국	✗	✗	✗	✗	✗
터키	✓	✗	✗	✓	✗
토고	✗	✗	✗	✗	✗
통가	✓	✓	✓	✓	✗
투르크메니스탄	✗	✗	✗	✗	✗
투발루	✗	✗	✗	✗	✗
튀니지아	✓	✗	✓ <sup>74</sup>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	✗	✗

<sup>74</sup> 튀니지아 형법 제 234 항은, 특히 아동의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묘사하는 “모든 시각적 녹화물 또는 사진”의 사용을 법으로 금한다.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파나마	✓	✓	✓	✓	✗ <sup>75</sup>
파라과이	✓	✓	✓ <sup>76</sup>	✓	✗ <sup>77</sup>
파키스탄	✗	✗	✗	✗	✗
파푸아뉴기니	✓	✓	✗	✓	✗
팔라우	✗	✗	✗	✗	✗
페루	✓	✗	✓	✓	✗
포르투갈	✓	✗	✓ <sup>78</sup>	✓	✗

<sup>75</su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정한 의무 보고 요건은 없지만, 파나마 형법 제 231-n 에는 포르노그래피나 성적 활동에 미성년자가 이용된 것을 알고 있는 이는, 그러한 정보를 자신의 직장, 업무, 사업, 직업 등 수단과 관련없이,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태만죄로 투옥된다고 제정되어 있다. 범행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성적 활동) 보고 후 입증되지 않으면, 보고한 사람은 당국에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에서 면제될 것이다. 워싱턴 디씨 소재 파나마 대사관의 Isabel Fernández 가 실종 및 착취 아동 국제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이메일(2006 년 4 월 12 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중).

<sup>76</sup> 파라과이 법 2861/06, 제 1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 아동 포르노그래프를 제작, 혹은 재생산 하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

<sup>77</sup> 인터넷 제공자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라과이법 3861/06, 제 7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목격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목격한 곳, 압수진행 사항, 이미지의 제거와 해당 범인의 신원확인, 체포와 처벌을 위해 해당 범죄를 즉시 경찰, 해당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벌금과 함께 최고 3 년까지 벌금과 함께 금고형에 처한다

<sup>78</sup> 포르투갈의 형법 제 172 항으로부터 추론해 볼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이라는 표현이 검사가 정보 통신 기술을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사운드 또는 영화를 유포하는 범행의 수단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싱턴 디씨 소재 포르투갈 대사관 대사 Pedro Catarino 가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회장 겸 CEO Ernie Allen 에게 보내 편지(2006 년 2 월 22 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국가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	“아동 포르노그래피” 정의됨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단순 소지	ISP 보고
폴란드	✓	✗	✓ <sup>79</sup>	✓	✗
프랑스	✓	✓	✓	✓	✓
피지	✗	✗	✗	✗	✗
핀란드	✓	✓	✓ <sup>80</sup>	✓	✗
필리핀	✓	✓	✓	✓	✓
한국(대한민국)	✓	✓	✓	✓	✗
헝가리	✓	✓	✓ <sup>81</sup>	✓	✗
호주	✓	✓	✓	✓	✓

<sup>79</sup> 폴란드 형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불법화하고 있지 않지만 형법 제 202 항에 의거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여겨지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여온 바 상기 조항이 출판물 형태와 온라인 형태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폴란드 정부 폴란드내 아동 성 범죄 대처 보고서 5-6 (2005년 5월 25일),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study/responses/poland.pdf> (2010년 7월 9일 방문). (이 내용은 ICMEC 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sup>80</sup> 핀란드 형사법의 제 17 장 섹션 18 에 “아동을 묘사하는 음란한 사진 또는 시각적인 기록을 배포하는 이”를 법으로 금한다.

<sup>81</sup> 헝가리 형법 섹션 195/A(3)에 따르면 비디오, 필름, 사진 또는 “기타 모든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포르노그래피 사진을 제작, 배포 또는 교환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는 중죄에 처한다. 또한, 헝가리 항소 법원의 최근 판결(번호 BH 133/2005)에 따르면, “기타 모든 방법”과 “대중에 대한 공개”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포함한다. 워싱턴 디씨 소재 헝가리대사관의 부대사 Viktor Szederkényi 이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 글로벌 운영담당 이사 Jessica Sarra 에게 보낸 편지(2006년 2월 6일) (국제 실종 착취아동 센터에 파일 보관 중).

## 결론

지난 6년간 본 ICMEC 이 전세계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법률 제정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비록 각국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양한 국제적 법률이 갖추어지고 있고, 이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동참해 주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아동 포르노 그래피에 대항에 싸우는 일은 비록 쉽지않은 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급속이 퍼지고 있는 이 병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다듬는 절대적 요소라 할것이다.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1700 Diagonal Road, Suite 625 ♦ Alexandria, Virginia 22314♦ USA  
전화 +1 703 837 6313 ♦ 팩스 +1 703 549 4504 ♦ [www.icmec.org](http://www.icmec.org)